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 7. 13 선고 2022가단2672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정우근

피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피고 1 내지 8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성 담당변호사 김덕현

9. 주식회사 I

10. 주식회사 J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도환

11. 주식회사 K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구

12. 주식회사 L

변론 종결 2023. 6. 29.

판결 선고 2023. 7. 13.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M와 피고 A, B, C, D, E, F,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사이에 별표 근저당권 내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일에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A, B, C, D, E, F,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은 M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별표 근저당권 내역 기재 각 등기접수일 및 접수번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G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피고들이 이를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M와 피고 G 사이에 2021. 9. 20.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G는 M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0. 13.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접수 제44485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제1차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18. 2. 19. 주식회사 N의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300,000,000원 중

270,000,000원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고(이하 '제1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M는 주식회사 N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주식회사 N은 2022. 1. 31. 폐업하였고, 원고는 2022. 4. 7. 기업은행에 254,041,22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차전13286호로 주식회사 N과 M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2. 5. 18. 주식회사 N과 M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738,353원 및 그 중 254,041,222원에 대하여 2022. 4. 7.부터 지급명령 최종송달일까지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위 지급명령은 2022. 6. 8.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제2차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16. 7. 15. M의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65,000,000원 중 55,250,000원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는바(이하 '제2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M는 원고가 M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할 경우 연 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구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M는 2021. 11. 18.경 그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면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22. 5. 4. 기업은행에 41,201,223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같은 날 94,450원을 회수하였다.

(3)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법적 절차 등에 사용한 대지급금은 91,321원이고, 일부 회수금 94,450원에 대하여 발생한 확정손해금은 20원이다.

다. M의 각 근저당권설정

M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었다(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1	A	2021.9.20.	2021.10.13.	104,000,000
2	B	2021.9.20.	2021.10.13.	104,000,000
3	C	2021.9.20.	2021.10.13.	58,500,000
4	D	2021.9.20.	2021.10.13.	39,000,000
5	E	2021.9.20.	2021.10.13.	32,500,000
6	F	2021.9.20.	2021.10.13.	39,000,000

1	A	2021.9.20.	2021.10.13.	104,000,000
7	G	2021.9.20.	2021.10.13.	26,000,000
8	H	2021.9.20.	2021.10.13.	32,500,000
9	(주)I	2021.10.5.	2021.10.19.	260,000,000
10	(주)J	2021.10.5.	2021.10.19.	260,000,000
11	(주)K	2021.10.5.	2021.10.19.	260,000,000
12	(주)L	2021.10.5.	2021.10.19.	32,5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제1차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한 구상금 연대보증채권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주식회사 N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폐업을 하는 경우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주식회사 N은 2022. 1. 31. 폐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22. 4. 7. 기업은행에 254,041,222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M에 대한 구상금 연대보증채권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아직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미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제1차 신용보증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주식회사 N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22. 4. 7. 원고가 기업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M에 대한 구상금 연대보증채권이 현실화된 점에 비추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제2차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한 구상금 채권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M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사업장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 또는 경매신청이 있는 때 채무자는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M가 사업장으로 사용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1. 18.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22. 5. 4. 기업은행에 41,201,223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원고의 M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아직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미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제2차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M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원고가 기업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M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현실화된 점에 비추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2) 갑 제7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M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일인 2021. 9. 20. 또는 2021. 10. 5. 당시 가지고 있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및 포천시 ○ 하천 35㎡인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합계는 1,951,939,600원이고, 포천시 ○ 하천 35㎡의 시가는 16,450,000원인 사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 당시 M의 소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561,925,5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P조합	대출 채무	1,800,000,000	갑11호증
2	원고	사전구상금 채무	252,000,000	
보증채무	48,000,000			
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5,500,000	갑13호증
4	경기신용보증재단		117,000,000	갑14호증
5	기업은행	보증채무	33,600,000	갑7, 8호증
6	포천세무서	조세채무	1,255,725,550	갑12호증
합계	3,561,825,550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무렵 M의 적극재산은 합계 1,698,389,600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3,561,825,550원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당시 M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할 것이고, M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과 체결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M의 당시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면 M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A, B, C, D, E, F, G, H은, 피고들이 주식회사 N 내지 M의 개인사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21. 11. 30. 퇴사한 근로자로서 체불임금과 퇴직금 지급 담보를 위하여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 M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므로 M에게 사해의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의 채권에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각 근저당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하지만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채권자는 처음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 그러므로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등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의 제공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33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받을 당시 위 피고들에게 우선 변제권 있는 임금 채권이 있었는지 살피건대, M가 개인사업체인 N을 운영하다가 주식회사 N을 설립한 다음 개인사업체의 직원 및 사업장 등을 그대로 승계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사실, 위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M가 운영하던 N에 입사하였고, 그 중 피고 A, B, D, E, F, H은 주식회사 N의 직원으로 전환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M와 피고 A, B, D, E, F, H 사이의 근로관계는 주식회사 N으로 모두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는 주식회사 N에 있다 할 것이고, M의 재산에 대하여 위 피고들의 채권이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A	2003. 4. 1.	2018. 1. 1.
2. B	1997. 4. 1.	2018. 1. 1.

1. A	2003. 4. 1.	2018. 1. 1.
3. C	2012. 3. 1.	
4. D	2014. 9. 1.	2017. 6. 30.
5. E	2015. 8. 1.	2017. 6. 30.
6. F	2014. 1. 1.	2018. 1. 1.
7. G	2015. 10. 1.	
8. H	2016. 1. 11.	2018. 1. 1.

피고 C은 자신이 N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주식회사 N의 직원으로 전환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을가 제4,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주식회사 N의 특판 영업직 이사로서 2017. 12. 19.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주식회사 N은 2017. 12. 29. 피고 C에게 5년 근속에 관한 재직기념 축하에 관한 증서를 교부하였고, 2020. 1. 1.경 피고 C을 특판이사로 임명하기도 하였던 사실, 주식회사 N은 2021. 10. 13.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 설정을 위한 퇴직금 정산 및 지급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을가 제3호증의 3,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개인사업체인 N의 직원으로 남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 C은 주식회사 N의 직원으로 고용승계되어 피고 C에 대한 퇴직금 지급채무는 주식회사 N이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G의 경우, 을가 제3호증의 7, 4호증의 7, 6호증의 2, 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G는 2015. 10. 1.부터 M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N의 직원으로서 4대 보험에 가입되었던 사실, 피고 G는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M를 진정한 사실, 피고 G의 퇴직금은 14,730,440원인 사실, M는 2021. 10. 13.경 G에 대하여 퇴직금 및 지연이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6,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을 설정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M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로자인 피고 G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하더라도 이는 우선변제권 있는 퇴직금 채권자인 피고 G에 대한 담보제공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보증사고 발생 직전에 피고 G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피고 주식회사 J과 피고 주식회사 K는, 주식회사 N에 물건을 납품하며 거래를 계속해왔는바, M는 계속적 거래 유지를 위해 피고 주식회사 J과 피고 주식회사 K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구입처로부터 외상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도 부득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다9461 판결 등 참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게 있어서 채권회수를 위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내지 가압류 등의 집행보전조치로 발생하는 사업추진상의 어려움은 그러한 조치를 행하는 채권자의 채권액이나 변제기의 도래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정이다. 또한 특정 채권자가 당시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권회수조치에 적극성을 보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들 사이에서 우선적 담보제공의 필요성에 관한 차별적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채무자가 사업활동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신규자금의 유입과 기존채무의 이행기의 연장 내지 채권회수조치의 유예는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적 추진을 위하여 가지는 경제적 의미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 추진의 의도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의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2921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주식회사 J과 피고 주식회사 K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주식회사 J과 주식회사 K의 거래 상대방은 주식회사 N일 뿐 M가 아니라 할 것인 점, 주식회사 N 내지 M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신규자금을 융통받은 것도 아니고, 기존 물품대금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주식회사 J과 피고 주식회사 K와 M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부득이한 담보설정에 불과하고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M와 피고 A, B, C, D, E, F,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사이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위 피고들은 M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별표 근저당권 내역 기재와 같이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라.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A, B, C, D, E, F, H,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는 M의 채무초과상태 여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등으로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앞서 본 악의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B, C, D, E, F,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G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정혜원

별지